

기술검토서

신청인	제작자명	제작자등록번호
	대표자명	대표자생년월일
	주소	
자동차	차명	최초제작자명
	형식	원동기형식
	차대번호	
차대번호표기(시행 계획) 내용의 적정성 [] 적합 [] 부적합		
자동차안전검사 시 주요 확인사항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·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 검토서를 교부합니다. 년 월 일 성능시험대행자 (인)		

유의사항

차대번호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합니다.

1. 조립자동차는 최초제작자 차대번호(1~8째 자리)
2. 수입자동차는 그 자동차의 차대번호